

보금자리론 관련서식 개정 전후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[별지7] 대출거래약정서(보금자리론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 출 거 래 약 정 서 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급자리론용)</p> <p>제2조 지연배상금</p> <p>① <생 략>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<u>아니하거나</u>,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·제7조, 제8조제2항 및 제3항, 제12조 및 고객고지사항 제1호에 <u>의하여</u>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 배상금(연체이자)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LTV·DTI 우대 적용 특약 -</p> <p>제13조 LTV·DTI 우대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가 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'조정지역(과열지역) 등' 인 경우로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인 경우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<u>전세사기피해자</u> 또는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.</p>	<p>[별지7] 대출거래약정서(보금자리론용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 출 거 래 약 정 서 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급자리론용)</p> <p>제2조 지연배상금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<u>않거나</u>, 기본약관 제7조 또는 이 약정 제6조·제7조, 제8조제2항 및 제3항, 제12조, <u>제16조</u> 및 고객고지사항 제1호에 <u>따라</u>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,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LTV·DTI 우대 적용 특약 -</p> <p>제13조 LTV·DTI 우대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가 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'조정지역(과열지역) 등' 인 경우로서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LTV와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인 경우 DTI 강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, 실수요자 요건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또는 <u>전세사기피해자들</u> 또는 보전용도(임차보증금 반환용도)에 관한 내용이 진술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건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표현 명확화</p>